#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8.18.]

##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1번지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47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및 현장계약,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은 당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 화를 위해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 택임에 따라 청년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에게 선순위로 공급됩니다.
- ① 성남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이거나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성남시에서 입주자로 추천 받은 자(이하 '창업인 계층' 이라고 함.)
  - 입주자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추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선순위 공급 이후 남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8.18.)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0. 8. 19.~2001. 8. 1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3.08.19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5. 8. 18. 이전)
- ③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고는 '19.12월 최초 공고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① (소득요건 완화)

공급순위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선순위	창업인(성남시 추천)	100% 이하	120% 이하
	대학생, 청년(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혼부부, 고령자	120% 010	
후순위	청년(단독세대주)	80% 이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130% 이하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이 아닌 일반조건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u>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u>

### ② (기간요건 완화)

공급순위	공급계층별 대상기간	일반조건	완화조건
	청년(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후순위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만 9세 이하

##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구분	성남시 입주자 추천 모집신청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선순위 (창업인 계층)	'20. 8. 31(월) ~ 9. 11(금) *등기우편 접수	LH에서 성님	<b>인 계층의 청약신청 및</b> <b>∤시 추천대상자에게 개</b> 추천 신청 시 휴대전화	별 문자안내 예정	'20. 12.10(목) 17:00 이후	(온라인계약) '20. 12.21(월) 10:00 ~ 12. 24(목) 17:00 국토부 부동산거래
후순위 (창업인 계층 외)	-	(인터넷청약) '20. 9. 14(월) 10:00 ~ 9. 23(수) 17:00 (PC 또는 모바일) (현장청약) 금회 현장청약 없음	'20. 9. 28(월)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20. 10. 5(월)~10.8(목) (등기우편 발송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임대공급운영부 위례A2-15 담당자 앞	(https://apply.lh.or.kr)  * ARS(1661-7700)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0. 12.22(화),23(수) (10:00~16:00) 점심시간12~13시불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1층 임 대공급운영부

- \* 성남시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청약은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금회에는 실시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_금회 .		세대 당 계약면적(m²)		임대조건			저하기느	최대전환 시					
공급 형별	구분	공급 대상	모집	호수	~ ~ ~	× 71	그 밖의	공용면적		임다	l보증금(천	년원)	월	전환가능 보증금		조건
형별	TE	대상	계약자	예비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임대료 (원)	한도액 (천원)	임대보증 금 (천원)	월임대료 (원)
		창업인 계층								39,960	3,996	35,964	149,850	(+) 17,000	56,960	64,850
		0 8 2 7 1 0								39,900	3,990	33,304	149,030	(-) 34,000	5,960	234,850
		대학생								37,740	3,774	33,966	141,520	(+) 15,000	52,740	66,520
		7170								31,140	3,114	33,300	141,320	(-) 32,000	5,740	221,520
	일반	청년(소득有)								39,960	3,996	35,964	149,850	(+) 17,000	56,960	64,850
14A	조건	02(= 113)	176	144	14.98	7.5743	1.8896	6.6266	31.0705	33/300	3,330	33/30 .	. 13,636	(-) 34,000	5,960	234,850
		청년(소득無)								37,740	3,774	33,966	141,520	(+) 15,000	52,740	66,520
										- , -	-,		,	(-) 32,000	5,740	221,520
		주거급여수급자								33,300	3,330	29,970	124,870	(+) 12,000	45,300	64,870
														(-) 28,000	5,300	194,870
	완화 조건	창업인계층, 대학생, 청년								44,400	4,440	39,960	166,500	(+) 19,000	63,400	71,500
	11.0	내각이, 이건												(-) 38,000	6,400	261,500
		창업인 계층								69,480	6,948	62,532	260,550	(+) 31,000	100,480	105,550
														(-) 59,000	10,480	408,050
		대학생								65,620	6,562	562 59,058	246,070	(+) 29,000	94,620	101,070
	01111													(-) 56,000 (+) 31,000	9,620	386,070 105,550
	일반 조건									69,480 6,948	948 62,532	,532 260,550		100,480	408,050	
26A				74	26.81	13.5559	.5559 3.3819	9 11.8599	8599 55.6077	65,620 6,562				(+) 59,000 (+) 29,000	94,620	101,070
		청년(소득無)									6,562	59,058	246,070	(-) 56,000	9,620	386,070
										57,900 5,790				(+) 26,000	83,900	87,120
		주거급여수급자									5,790	52,110	217,120	(-) 49,000	8,900	339,620
	와하													(+) 34,000	111,200	119,500
	완화 조건	창업인, 대학생, 청년								77,200	7,720	69,480	289,500	(-) 66,000	11,200	454,500
		창업인 계층												(+) 31,000	100,480	105,550
	일반	(주거약자용)								69,480	6,948	62,532	260,550	(-) 59,000	10,480	408,050
2641	조건	고령자	12	17	26.01	12 5550	2 2010	11 0500	FF 6077	72.240	7 224	CC 00C	275.020	(+) 33,000	106,340	110,020
26A1		(주거약자용)	13	17	26.81	13.5559	3.3819	11.8599	55.6077	73,340	7,334	66,006	275,020	(-) 62,000	11,340	430,020
	완화	차어이 게츠 그려지								77 200	7 720	60.490	300 500	(+) 34,000	111,200	119,500
	조건	창업인 계층, 고령자								77,200	7,720	69,480	289,500	(-) 66,000	11,200	454,500
		창업인 계층								112,320	11 222	101 088	421,200	(+) 50,000	162,320	171,200
	일반	082710								112,320	11,232	101,000	421,200	(-) 96,000	16,320	661,200
44A	조건	신혼부부	135	115	44 69	22 5965	5 6374	19 7694	92.6933	124 800	12 480	112,320	468,000	(+) 56,000	180,800	188,000
""		한부모가족	133	113	11.05	22.3303	3.0371	13.7031	32.0333	121,000	12,100	112,320	100,000	(-) 107,000	17,800	735,500
	완화	창업인 계층,								124,800	12.480	112,320	468,000	(+) 56,000	180,800	188,000
	조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0	,	(-) 107,000	17,800	735,500
		창업인 계층								112,320	11,232	32 101,088	421,200	(+) 50,000	162,320	171,200
	일반	(주거약자용)								112,320	11,232			(-) 96,000	16,320	661,200
44A1	조건	고령자	25	25	44.69	22.5965	5.6374	19.7694	92.6933	118.560	8,560 11.856	66 106,704	444,600	(+) 53,000	171,560	179,600
		(주거약자용)						.5.7054	32.000	3,300	,	-, -		(-) 101,000	17,560	697,100
	완화 조건	창업인 계층, 고령자								124,800	12,480 112,320	468,000	(+) 56,000	180,800	188,000	
	오건													(-) 107,000	17,800	735,500

- \* (구조 및 난방)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입주예정) 2021년 1월예정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계약자와 예비자로 나누어 선정되고,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계약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입니다.
- 금회 공고는 2019년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청년 (예비)창업인 및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 뒤 남은 주택은 행복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자(창업인 외의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은 <mark>청년 창업인계층에게 우선공급</mark>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 14A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26A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26A1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 44A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됩니다.
  - 44A1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 44A1 주택형은 건설호수 26호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1호를 제외한 25호를 공급하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2020년 10월경)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시, 금회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4형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책장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21.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별 최대가주가능기간은 대학생, 청년: 6년, 창업인, 신혼부부계층: 6년(무자녀), 10년(1자녀이상), 고령자, 수급자: 20년입니다.
- <u>주거약자용 주택</u>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인 청년 창업인 계층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자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勢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u>무주택세대구성원</u>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혼인 중이 아닌 창업인, 대학생,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 입주자격 구분

• 일반조건대상자 : 각 계층별 상세 자격요건 중 일반조건 참조

• 완화조건대상자 : 각 계층별 상세 자격요건 중 완화조건 참조

(소득, 소득종사기간, 혼인합산기간, 자녀의 연령 등)

## 4-1. 창업인 계층 (선순위)

\* 성남시 전략산업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추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성남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이거나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성남시에서 입주자 추천을 받은 자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0. 8. 19. ~ 2001. 8. 18.)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구원구	일반조건(100%)	완화조건(120%)		
1인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창업인'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을 말함
- ※ 창업인 계층의 자격검증대상은 아래와 같음

공급신청자 구분	주택소유여부 검증 시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혼인중이 아닌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혼인중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성남시에서 입주자 추천 시 신청자격별 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할 예정이며, 입주자 추천 및 순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성남시의 입주자 추가모집 추천 공고(2020, 08,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창업인 계층 입주자 선정기준 : 성남시가 정한 순위 → 경쟁 시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성남시가 정한 순위 → 배점합산 → 경쟁 시 추첨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sup>\* &#</sup>x27;장애의 정도'는 공고문 [9.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세대구성원 범위는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함

## 4-2. 대학생 계층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ଡ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⑭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①-⑦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구원구 	일반조건(100%)	완화조건(120%)		
1인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순위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14,26형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4-3. 청년 계층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인 경우 ①-⑨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⑪와 ②~⑤)을 모두 갖춘 사람

- ①-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0. 8.19.~2001. 8. 18.)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완화 100%) 이하일 것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수	일반	조건	완화조건		
신청자		해당세대(100%)	본인(80%)	해당세대(120%)	본인(100%)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5,255,771원 이하	4,379,809원 이하	
세대원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6,752,276원 이하	5,626,897원 이하	
있는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7,471,610원 이하	6,226,342원 이하	
세대주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9,112,900원 이하	7,594,083원 이하	
그 외	-	-	2,116,118원 이하	-	2,645,147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 본인은 524,583원(완화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u>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u>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⑭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 3)의 '예술인'이란「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순위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 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14, 26형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4-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u>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u> <u>모두 무주택자)</u>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ଡ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①-岎와 ③~⑥, 한부모가족은 ①-⑮와 ③~⑥)을 모두 갖춘 사람

- ①-②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완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완화 10년 이내)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완화 130%)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수	일반	일반조건		·조건		
	일반(100%)	맞벌이 부부(120%)	일반(120%)	맞벌이 부부(130%)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5,255,771원 이하	5,693,752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6,752,276원 이하	7,314,96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7,471,610원 이하	8,094,245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8,326,025원 이하	9,019,860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9,112,900원 이하	9,872,308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맞벌이 부부는 786,875원(완화 852,4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동일인과의 혼인기간은 혼인관계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기간을 합산함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성남시 또는 연
		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ı	3순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4-5. 고령자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구원구 	일반조건(100%)	완화조건(120%)
1인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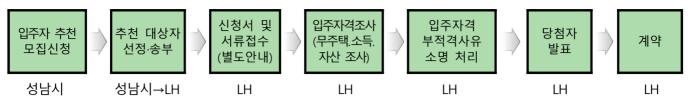
## 4-6. 주거급여수급자 (후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주거급여수급자'란「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 14, 26형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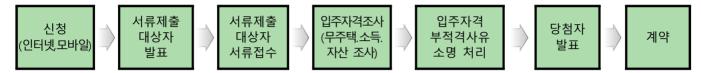
## 5. 입주자 선정 방식 및 청약신청 방법 ※ 창업인계층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추천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창업인 계층)** \* 성남시 전략산업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입주자 추천 자격 기준일 : 2020.08.18.

### ■ 입주자 선정절차(창업인 외 계층)



#### ■ 입주자격 검증

-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창업지원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시당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인터넷(PC) 및 현장청약 방법

- o 인터넷(PC) 신청자(창업인계층 해당사항 없음)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만65세 이상 고령자) : 금회 현장접수 없음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o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창업인계층 해당사항 없음)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 앱 사용 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u>누락 등 착오입력에</u>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o기타사항
-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9.14(월) 10:00~접수마감일 '20.9.23(수) 17: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인 '20.9.23(수)일은 17시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 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o 서류제출대상자(창업인계층 별도안내 예정)는 '20.9.28(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20.10.5(월) ~ 10.8(목)] 필요서류를 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1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임대공급운영부 위례A2-15 담당자 앞
- ㅇ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08.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미혼인 창업인 계층".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임대공급운영부 위례A2-15 담당자 앞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부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 <del>금융·신용·</del>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li>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 기준 미충족 시 계약해지처리 될 수 있음</li> <li>※ 주거급여수급자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li> </ul>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ul>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li>*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li> <li>&lt; 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해당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사람</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ul> <li>"창업인 계층"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li> <li>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li> <li>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li> <li>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해당서류 추가제출</li> </ul>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인 한부모가족	1통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주거'	인 계층 중 약자용 주택 신청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 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 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 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 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대학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생   계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충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만19세이상 ~	※ 국민인급 비가입자도 할입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만39세 이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청   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계 층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해당 직장
	해당자만 제출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b>혼인관계증명서</b>	공사양식
신 혼	예비 신혼부부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입주 전까지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b>혼인관계증명서, 주민</b>	주민센터
부부		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됨)	
및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l l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u>※ '전체이력'으로 발급)</u>	
한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국민연금공단
부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가 족	해당자만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해당직장
	제공자년 제출	※ 애당자규도 직당도세지 확인 물기 시 세직당당시(세직당당시 세물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계	계르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 " - 층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세무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그러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고령자 그어스그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조고그어스그디즈면서	ᄌᇚᄱᇊ
T/1	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Ι	배청약자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기존 소득근거지, 변경 소득근거지 모두) 등	해당 직장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0. 12. 10(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 계약안내

-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온라인 계약 [기간 : 2020. 12. 21(월) ~ 2020. 12. 24(목)]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기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참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현장 계약 [기간 : 2020.12.22(화), 23(수) 10:00 ~ 16:00] (점심시간12시~13시 불가)
  - 현장계약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_			
구	분	구비서류 등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계약금 : 계좌이체(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u>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u>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 시는 서명 가능)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제3자 대리 계약 시	인감 증명 방식	<ul><li>④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li><li>⑤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li><li>⑥ 당첨자 인감도장</li><li>⑦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li></ul>	
	서명 확인 방식	④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당첨자 도장 ⑦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 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 동 산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li> <li>「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li> <li>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자 동 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총 자 산	금융 자산	<ul>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예수금 : 예수금 잔액</li> <li>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자산	<ul> <li>「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등	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 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ul> <li>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기를 받는 자)</li> </ul>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1	1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기타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1		I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 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대일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li>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총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직권조사 등록										
· 자산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i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 9.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 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 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 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 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 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자석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 입주 자격 완화 사항

• 기본(최초모집기준)자격 기준을 초과하여 완화된 자격으로 신청·계약하는 경우, 완화된 임대조건을 적용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표 참고)

항목	내용
소득요건 완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① 일반* - 기본: 100% → <b>완화: 120%</b> ② 청년(단독세대주) - 기본: 80% → <b>완화: 100%</b> ③ 맞벌이 신혼부부 - 기본: 120% → <b>완화: 130%</b> * 창업인 계층, 대학생, 청년(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일반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5년 이내 → <b>완화: 7년 이내</b>
기간요건 완화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총 혼인기간 기본: 7년 이내 → <mark>완화: 10년 이내</mark>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기본: 만 6세 이하 → <b>완화: 만 9세 이하</b>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창업인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0년의 경우 2,46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필요시 자격확인을 위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고극기군 오피 미필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란 계약자가 2회이상 연속하여 소득초과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미혼인 창업인 계층,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금지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지구여건

- 위례신도시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4호, 2018.10.12)로 승인된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3차) 및 실시계획변경(11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 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 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 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 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및 단지특성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 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인근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

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송파 공영차고지, 복정역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 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장지공영차고지,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서울공항,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 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외부여건

-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단지 외부 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시 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남측 부지 착공 전으로, 향후 공사 소음 발생할 수 있음
- 입주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수 있음

### ■ 단지내부여건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 명칭, 동번호, Bl(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이 가능함.
- 부대시설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구 및 단지특성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후 적정하게 배치할 예정임.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 가 발생 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보도, 주현관,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 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각각 2.3m임.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 전기, 통신 지구여건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 개폐기는 아파트와 상가에 각각 설치됨.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3601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옥상, 지하1층 휀룸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은 출입구경비실 및 3603동 1층에 설치됨.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정 공기 유입은 에어컨(냉방 장치)이 아닌 환기 팬에 의한 것임.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태양광 발전 장치는 각동 옥상에 설치됨
- 단지 내에는 옥외 쓰레기 보관소, 기계, 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DA, 자전거 보관대, 어린이 놀이 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 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일조, 조망, 발전기 가동 배출가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출입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비디오폰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 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가 날 수 있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 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 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음.
- 일부세대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 가 발생할 수 있음.

#### ■ 전기, 통신 기타 유의사항

- 세대 내 통합 관리반(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매입 설치되어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고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각 동별 출입하는 로비폰은 비밀번호 및 카드 방식 공용임.
- 단위세대 발코니등은 세탁기 위치를 고려하여 벽부형으로 설치함.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일반세대 및 주거약자형 세대 모두 조립실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경우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냉장고가 놓일 것으로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14m'형은 발코니폭이 협소하여 소형 세탁기만 설치 가능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발코니에는 화재 시 옆 세대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벽)가 설치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사항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받지 않음(1,000세대 이상 의무 인증대상이나, 성남위례 A2-15블록은 1,0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홈네트워크	미적용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성남위례 A2-15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흥진건설(주) 동문건설(주)

## 13.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일반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26A1,44A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구 분	설치항목
현관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조절, 미닫이문, 좌변기・샤워부스 안전손잡이, 접이식의자

#### ■ 일반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이동식)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 \* 제공대상 중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 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중 택1) 제출
  - ▶ 신청방법 및 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신청
  - o 온라인계약체결 하시는 분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LH 서울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 임대공급운영부)로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소인이 '20.12.24(목) 이내여야 함]
  - o 현장계약 체결 하시는 분 : 현장에서 신청서와 신청자격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창업인 계층 관련 문의 : 031-729-8913, 8914 ■ 창업인 계층 중 1인 창조기업 관련 문의 : 성	4(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임대공급 관련 업무는 아래 일시에만 가능하며, 세대유니트(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1층) - 현장계약: '20.12.22(화) ~ 23(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현장계약 장소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 오시는 길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로 나오신 후 나오신 방향이 아닌 '선릉역'방향으로 약 300m 올라오셔서 파란색 간판의 '드림디포' 문구점이 보이시면, 바로 오른쪽 골목에 LH 서울본부 사 옥이 있습니다.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